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위원	신교선 의원 이수현 의원	소 속	평 창 군 의 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자치행정과장)	일 자	질의 : 2001년6월25일 답변 : 2001년6월25일
회 의	제86회평창군의회(정례회)제1차 예결특위		

【 질의요지 】

-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의 관련 자료 제출

【 답변 요지 】

-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의 관련 자료 : 불임

문서번호	기획13310- 421
보존기간	3년
결재일자	2001. 8. 6

기 안	담 당	실 장	부군수	군 수
이사장	(날인)	(날인)	(날인)	828
협 조				

초·중·고교『교육관련경비』 지원계획

평 창 군
 (기 획 실)

초·중·고교『교육관련경비』 지원계획
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및 「시·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고등학교이하 학교에 대해 학교교육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사업에 시·군에서도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.
- 또한, 교육재정 보조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삭제되어 일선 초·중·고교로부터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요청이 다수 접수 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지원근거
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
-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

□ 지원대상사업

- 학교의 급식시설·설비사업
-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
-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
-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
-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공간 설치사업

□ 교육경비보조 불가능 단체

-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단체
- 국고보조금 또는 도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시·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단체
-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
 ⇒ 평창군의 경우, 교육경비보조 가능단체임.

□ 교육관련경비 지원계획

- 교육재정보조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삭제되고, 시·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종전 도지사의 보조사업에 대한 승인제한요건이 완화되면서
 - 각급 초·중·고교로부터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요청이 접수되고 있음
- 향후, 각급 학교로부터 지원요청되는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범위와 보조사업제한 여부 등을 철저 검토후 교육청과 협의
 - 지원대상학교 선정후 매년 5억원 범위안에서 당초예산에 반영 지원
- 교육청과 사전협의,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수립
 - 각급 학교별로 보조금 요청시 무분별한 지원에 따른 형평성 및 지원액 등에 논란 우려
 - 교육청과 사전 협의, 각급 학교별 시설 및 향후 시설신축계획 등 시설물 조사로 지원계획 수립
- 보조 지원액 결정시 사업의 전반적인 여건 분석
 - 사업규모, 사업기간, 교육청 예산확보액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여건 분석후 자체 가용재원 확보여부에 따라 지원
- 보조금 집행에 따른 검사 및 철저한 정산실시
 - 보조금지원 결정후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집행에 따른 실적 및 정산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보조 목적외 사용 여부 등 관리
- 특히, 교육지원예산은 매 연도별 당초예산 편성시 교육청과 협의 반영하고
 - 추가지원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(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지원 불가)

- 「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」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제한 여부를 철저히 검토, 지원에 신중을 기해 운영

□ 각급학교별 보조금 신청현황

(단위:백만원)

학 교 명	사 업 내 용	총사업비	신 청 액	비 고
합 계	3개교	2,430	680	
진부고등학교	다목적교실(1동)	1,200	250	급식소 - 250 다목적 - 기획부
속사초등학교	급식소(1동)	30	30	
평창중학교	다목적교실(1동)	1,200	400	

- 금번 신청된 학교의 지원액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
 - 각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, 사업비 확보여부, 사업기간 등 사실조사 실시(3월중)
 -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, 각급 학교별 지원여부를 결정
 -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규모에 따라 학교별 지원액을 결정, 예산에 반영
- *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경우, 관내 각급 학교로부터 다수의 지원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추후 신청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 해당여부와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에 철저를 기해 시행.